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3. 6. 24.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중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를 각각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로 함. (안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나.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을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으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로 함. (안 제13조제2항)

다.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차운영자 (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라 한다)” 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로 함.(안 제15조제2항제1호)

라. “신고하여야” 를 “제출하여야” 로 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를 “제출하

여야 하며," 로 하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신고" 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로 함. (안 제16조제1호~제3호)

마.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로 함.(안 제17조제2호)

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 을 "「지방세기본법」" 으로 함.(안 제19조제2항)

사.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신설함.(안 제2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를 각각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을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 하여야 한다”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한다.

안 제16조제1호 중 “신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신고”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로 한다.

안 제17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 관련)”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로 하고,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 란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사업장별로 처리자 또는 운반업자 간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별표 2의 제목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을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 2의 “배출요령” 란 중 “유해하게”를 “유해하거나”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 3의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 란 제1호 나목 및 다목과 제2호다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 서식 중 "제15조 제3항"을 각각 "제15조 제3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 서식 중 "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뒷면) 작성요령 중 "집단급식소, 음식점·호텔·콘도 등, 대규모 점포" 란 중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를 각각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로, "소형복합찬기 이용"을 "소형·복합찬기 이용"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의 작성요령 제2호 중 "소멸화등으로"를 "소멸화 등으로"로, 제3호 중 "사료등으로"를 "사료 등으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하단의 "마포구청장 귀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원안과 같음)
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1.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3. (생 략)	3. (원안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원안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원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③ ~ ⑤ (생 략)	③ ~ ⑤ (원안과 같음)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략)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⑤ ---------- ------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2.·3. (생 략)	2.·3. (원안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 **제출하여야** ----------.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2. ---------- ------- **제출하여야 하며,** ----

서를 작성 할 때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신고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 ---------- ---------- ----.
4.·5. (생 략)	4.·5. (원안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생 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원안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 ---------- ---------- ---------- 「지방세기본법」--------.
<신 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 관련)

□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 : 원)

구분	일반가정용(40원/L)	사업장용(50원/L)
1ℓ	40	-
2ℓ	80	
3ℓ	120	-
5ℓ	200	250
10ℓ	400	500
20ℓ	800	1,000

〈신 설〉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 분	단위	수수료
공동주택	kg	90원

수 정 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

□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

(단위 : 원)

구분	일반가정용(40원/L)	사업장용(50원/L)
1ℓ	40	-
2ℓ	80	
3ℓ	120	-
5ℓ	200	250
10ℓ	400	500
20ℓ	800	1,000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사업장별로 처리자 또는 운반업자 간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 분	단위	수수료
공동주택	kg	90원

원 안

[별표 2]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게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수 정 안

[별표 2]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원 안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수 정 안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원 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⑥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증명서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⑥ 사업장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증명서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청 장 [인]

원 안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원 안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 안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 · 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

수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